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 일괄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확성 제고 및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0건의 기존 정부 조직 명칭 인용 조례 개정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조(「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개정)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제통상의 제2호에 대한 근거법령 중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국토해양부 고시)”을 각각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교통부 고시)”으로 한다.

제10조(「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1조(「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구미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9호 중
“안전행정부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우대상) ①시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는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예우대상)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제관련 단체에서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중 장관 및 <u>중</u> <u>소기업청장</u>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	4. ----- <u>중</u> <u>소벤처기업부장관</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u>중소기업청</u> 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 ----- ----- ----- <u>중소벤처기업부</u> ----- -----.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중소기업청</u> 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 14.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u>중소벤처기업부</u> ----- -----. 6. ~ 14.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② (생략)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계속>

현행	개정안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미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중소기업청장</u> 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 -----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은 <u>행정자치부가</u>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행정안전부</u> ----- ----- -----.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u>미래창조과학부장관</u> 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 ----- ----- -.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u>행정자치부장관</u> 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u>행정자치부령</u>)을 따른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행정안전부령</u>)-----.

【별지 1】

■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관련)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소 계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비율(안정성)	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	
	- 대손충당금적립율	1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구미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② ~ ③ 생략

소관 실·과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김 용 학
	담 당	김 종 연
	담 당 자	손 창 호 (480-6522)